

부산광역시사하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6. 3. 11 ————— 사하구청장

나. 회 부 일 자 : 1996. 3. 12

다. 상 정 일 자 : 제49회 사하구의회(임시회)

제2차 총무사회위원회('96. 3. 22) 상정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박춘재 보건소 서무과장)

가. 제안이유

국민건강 증진법(1995. 1. 5 법률 제4914호)제10조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나. 주요골자

○ 부산광역시사하구 건강생활 실천협의회는 구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건강증진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심의(안 제2조)

○ 건강생활 실천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○ 1995. 1. 5 법률(제4914호)로 제정된 "국민건강증진법"(제10조)에 의거,

각 자치단체별로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, 단체,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 실천 협의회를 구성토록 하였으며, 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므로서 이에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당연하며,

○ 내용은 건강생활 실천협의회의 설치목적, 기능, 구성, 위원의 임기, 회의 개최 및 필요시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요청 등 전반적인 조례의 내용, 체계, 형식 등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여지나

- 본 조례(안) 제2조 조문의 제목 「(심의사항)」은 「(기능)」으로 변경하는 것이 협의회와 기능이나 역할이 무엇인지 누구든지 쉽고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적당하다고 사료됨.
- 아울러 '95 1월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된 이후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각종시책 마련과 국민건강을 저해하는 제반요소의 제거 등의 범국민적 노력과 함께 금연, 절주 운동 등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에다 대부분의 국민이 체력 및 건강증진 내지 보호에 높은 관심과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만큼 빠른기간내 시행규칙을 제정함은 물론 실질적인 운영으로 건강생활실천 협의회가 제기능을 다하여 건강한 사회, 건강한 국민생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관부서에서의 적극적인 추진 노력이 요구됨.

4. 질의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없 음

6. 심 사 결 과 : 원안의결